# 사기·상해·업무방해·폭행·모욕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2. 2019노2969, 3280(병합)]



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항 소 인】쌍방

【검 사】김훈영, 신건호(기소), 박영상(공판)

【변호인】 변호사 이범휘(국선)

【원심판결】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5.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/ 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9고 정1468 판결

# 【주문】

1

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.

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.

### 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각 형(제1원심: 징역 1년 2월, 제2원심: 벌금 300만 원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(양형부당)

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 2. 직권판단

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,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, 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### 3. 결론

제1,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각 형(제1원심: 징역 1년 2월, 제2원심: 벌금 300만 원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. 검사(양형부당)

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 2. 직권판단

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,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, 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### 3. 결론

제1,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각 형(제1원심: 징역 1년 2월, 제2원심: 벌금 300만 원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(양형부당)

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# 2. 직권판단

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,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, 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# 3. 결론

제1,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【이유】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각 형(제1원심: 징역 1년 2월, 제2원심: 벌금 300만 원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. 검사(양형부당)

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 2. 직권판단

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,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, 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# 3. 결론

제1,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[이유]

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각 형(제1원심: 징역 1년 2월, 제2원심: 벌금 300만 원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(양형부당)

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# 2. 직권판단

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,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, 피고인에 대한 제1,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# 3. 결론

제1,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